

안전한 어린이 생활 환경 제공, 어린이 안전 법제 개선으로 시작

최근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어린이를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 법제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_ 지광석 팀장(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안심할 틈 없는 어린이 사고, 안전강화 대책 필요해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안전할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를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 발표된 제4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2018~2020년)에서도 ‘소비자안전 취약 분야 안전 확보’가 중점 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향후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안전강화를 위한 정부정책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소비자안전 법제 현황 및 체계와 그간 논란이 되었던 어린이 안전사고(위험)의 사례 분석을 통해 몇 가지 개선방향을 짚어보았다.

국내 어린이 안전 법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국내 어린이 안전 법제는 품목별 대분류에 따라 어린이 제품 분야, 어린이 식의약품 분야, 어린이 시설·환경 분야, 학교안전 분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어린이 안전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이며 나머지 법률은 부차적

 <p>어린이 식의약품 분야</p>	<p>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상 어린이 안전용기·포장 관련 규정 등</p>
 <p>어린이 시설·환경 분야</p>	<p>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동복지법상 아동놀이시설물의 안전기준, 영유아보육법, 환경보건법 등</p>
 <p>어린이 제품 분야</p>	<p>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화장품법·화평법상 어린이보호포장 관련 규정</p>
 <p>학교안전 분야</p>	<p>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제12조 상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p>

으로 일부 장 또는 조항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을 사전 안전관리대상으로 확대하되, 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의 3가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7-0018호, 2017. 1. 31)에 따르면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적용하고 동일한 항목에 대해 개별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

-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원소 함유량, pH, 아릴아민, 사용금지물질(색면) 등의 허용치 규정
- (물리적 안전요건) 작은 부품, 가장자리, 자석과 자석부품, 유리 등 안전요건 규정
- (전기적 안전요건) 어린이제품에 포함되는 리튬 2차 전지의 안전요건, 안전정보와 전자표시에 대한 규정
- (표시요건) 어린이제품의 표시 방법 및 표시 항목 규정

안전사고 발생 요인 다양해 주의·개선 필요

안전사고의 발생 요인은 실로 다양하다. 가령 어린이가 모래 놀이터에서 흙장난 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계통 병원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래 교체와 소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기검사나 소독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모래의 경우 「환경보건법」에 따라 놀이터 신축·증축·수선 시에만 확인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5개 품목에 대해 특정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액상 제품(세정제는 가루 포함)에만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를 하고 있다. 정작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한 제품(캡슐

어린이 제품 개별안전기준



형 합성세제 등)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용어 혼동 및 안전기준 미흡 등 문제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며 「어린이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어린이를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는 어린이를 만 13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어린이를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어린이 연령 기준이 불일치해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동문 관련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안전 치수 확보와 안전 센서 및 주의·경고 표시 부착 관련 규정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어린이에게 유해한 니트로사민류 제한 기준에서도 합성수지제 어린이 제품에 한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안전, 새로운 변화를 위해

어린이 안전 법제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의 목적과 학령을 고려해 어린이 대상 연령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놀이터 내 모래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유기기구(트램펄린, 에어바운스 등)의 위해도 평가와 규제수준, 시설물 기준(자동문 안전 기준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포함된 제품은 품목·소관·형태(제형)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린이보호포장을 하도록 의무대상을 적극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 외에도 규제 우회나 회피의 감시 및 기준 위반의 신속한 적발을 위해 민관 차원의 폭넓은 감시활동과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소비자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사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학교 차원의 교육과 구체적인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